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사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1.3.23.)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5조~제12조)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실적 보고 등(안 제13조~제18조)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사업의 지도·감독(안 제19조)
- 협력체계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021. 9. 24.)에 따라,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sup>5)</sup>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공공보건의료사업<sup>6)</su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sup>7)</sup>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4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것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본 위원회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3쪽

(예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필수보건의료 관련 정부지정센터장, 보건소장,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 안 제12조(적용)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회의 공개, 위원회 운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 없이 기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다만,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조항들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첫째, 안 제6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의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u>	제6조(위원회 구성) ③ <u>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

- 둘째,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르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의 순서로 규정토록 하고 있음. 이에 안제9조(위원회의 기능)는 조문 배열 상,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 바, 조 위치를 바꾸고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u>제6조(위원회 구성)</u>	<u>제6조(위원회 기능)</u>
<u>제7조(위원회 임기)</u>	<u>제7조(위원회 구성)</u>
<u>제8조(위원장의 직무)</u>	<u>제8조(위원회 임기)</u>
<u>제9조(위원회 기능)</u>	<u>제9조(위원장의 직무)</u>

- 셋째, 안 제10조(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항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본 위원회는 법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로 기능상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제10조(위원회 회의) <u>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제10조(위원회 회의) <u>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u>

-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기능, 구성, 위탁 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 자료협조 요청,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법적, 내용적 문제가 없음.
- 안 제20조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 안 제21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한 것임.

####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다만, 앞서 지적한 수정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요구됨.